

의안번호	2204899
의 퇴 인	조국의원
회 답 일	2024.12.12.
추계번호	24D4511

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영토주권 수호 기본계획의 수립,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의 운영, 독도의 날 지정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억 2,5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6억 8,500만원(연평균 3억 3,700만원)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영토주권 수호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 등)	110	0	0	0	0	110	22
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지급(안 제7조)	15	15	15	15	15	75	15
독도의 날 지정(안 제11조)	300	300	300	300	300	1,500	300
합 계	425	315	315	315	315	1,685	337

주: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
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¹⁾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4조(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외교활동)	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국제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5조(영토주권 수호 기본계획의 수립) 및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제7조에 따른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·확정하여야 함(안 제5조)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(안 제6조)	의무규정
3	안 제7조(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)	기본계획 심의 등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4	안 제8조(독도 및 동해 등의 표기 현황 파악 등)	외교부장관은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과 유관기관을 통하여 세계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9조(독도 및 동해 등 영토주권의 교육 및 홍보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안 제10조(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)	외교부장관은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하여 국제적 차원의 독도 및 동해의 조사·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등을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1조(독도의 날 지정)	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도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8	안 제12조(국고 지원)	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13조(연차 보고)	국가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	의무규정

1) 외교부는 세부사업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(2531-401) 사업의 내역사업 영토주권 수호사업에 2023년 53억 4,200만원을 편성하여 영토주권 관련 연구용역, 자료수집·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음. 따라서 제정안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성과분석 등은 외교부의 기존 인력과 예산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, 재정수반요인에 포함하지 않음.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4조(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외교활동)	X	국가 등이 실시할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외교 활동의 내용, 사업 규모 등을 추정 곤란
2	안 제5조(영토주권 수호 기본계획의 수립) 및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○	—
3	안 제7조(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)	○	—
4	안 제8조(독도 및 동해 등의 표기 현황 파악 등)	X	독도 및 동해의 표기 현황 파악을 실시·보고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의 수, 대상 자료 수 등을 추정 곤란
5	안 제9조(독도 및 동해 등 영토주권의 교육 및 홍보)	X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독도·동해의 영토주권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의 내용, 사업 규모 등을 추정 곤란
6	안 제10조(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국제협력)	X	외교부 등이 실시할 국제협력 관련 활동의 내용, 사업 규모 등을 추정 곤란
7	안 제11조(독도의 날 지정)	○	—
8	안 제12조(국고지원)	X	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·단체가 실시할 독도·동해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, 사업별 지원규모 등을 추정 곤란
9	안 제13조(연차보고)	X	연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, 독도·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 관련 시책의 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보고서 인쇄부수 등을 추정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5조에 따른 영토주권 수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가 기존에 수립한 기본계획 관련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함
 - 외교부는 2022년 재외동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²⁾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므로, 이를 준용함
 - 영토주권 수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므로, 추계기간 중 2026년에만 비용이 발생
 - － 안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은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
- 안 제7조에 따른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확한 위원 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가 30명이고, 이 중 1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한다고 가정
 -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 수당 및 안전 검토 수당은 1회당 25만원으로 가정하고, 분기별로 연 4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가정
 -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참석 수당 및 안전 검토 수당은 추계기간동안 변화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가정
- 안 제11조에 따라 지정되는 독도의 날에 시행되는 행사·교육·홍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확한 소요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해양수산부 소관 유사 기념행사 예산을 고려하여 연간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‘바다의 날’ 행사에 최근 3년간 2.8~3억원, ‘수산인의 날’ 행사에 최근 3년간 1.8~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고려하여, 연간 ‘독도의 날’ 기념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에 연 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－ (바다의 날) 매년 5월 31일³⁾, 최근 3년간 기념행사 예산 2.8~3억원
 - － (수산인의 날) 매년 4월 1일⁴⁾, 최근 3년간 1.8~2억원

2) 세부사업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 구축(2834-403)

3)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(기념일 등)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,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.

- 독도의 날 기념행사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해양수산부 소관 유사 기념일 행사 예산: 2021~2023년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	2021	2022	2023
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(2031-300)	바다의 날	300	280	300
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(3044-340)	수산인의 날	200	180	180

자료: 1.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2, 「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Ⅱ-1)」 2023.1.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⁵⁾를 적용함
-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영토주권 수호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외교부의 2022년 재외동포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준용하고,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, 영토주권 수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1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영토주권 수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영토주권 수호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	110	0	0	0	0	1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번호	기념일	날짜	주관 부처	행사 내용
26	바다의 날	5. 31.	해양수산부	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,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북돋우며,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.

- 4)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5조(수산인의 날) ① 수산업·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, 수산인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.

- 5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5%	2.1%	2.0%	2.0%	2.0%	2.0%

나.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의 운영(안 제7조)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의 15명의 민간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하면, 민간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연간 1,500만원임
- 안 제7조에 따라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 1,5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7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지급(안 제7조)	15	15	15	15	15	7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독도의 날 지정(안 제11조)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으로 추계됨

[표 5] 독도의 날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독도의 날 지정(안 제11조)	300	300	300	300	300	1,5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영토주권 수호 기본계획의 수립,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의 운영, 독도의 날 지정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억 2,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6억 8,5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영토주권 수호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	110	0	0	0	0	110
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지급(안 제7조)	15	15	15	15	15	75
독도의 날 지정(안 제11조)	300	300	300	300	300	1,500
합 계	425	315	315	315	315	1,68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